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정효삼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보도자료

2021. 1. 21.(목)

제목

A○○ 군수 뇌물수수 등 사건 처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(부장검사 고희곤)는 A○○군수가 ○○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 B○○으로부터 공사대금 9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 수수, 군수의 □□태양광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비용 절감을 위해 군 예산 1억 7,500만 원으로 공사 발주, 직위를 이용한 관급자재 납품업체 변경 및 직무관련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A○○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뇌물), 업무상배임미수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,
- 그 과정에 가담한 건설업자 B○○를 뇌물공여, 여성기업지원법위반, 업무상배임미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, ○○군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미수로 약식 기소하였음

I

피고인

- A○○ [72세, 불구속 기소], ○○군수
- B○○ [57세, 불구속 기소], ○○개발 대표
- C○○ [54세, 약식 기소], ○○군 공무원
- D○○ [45세, 약식 기소], ○○군 공무원

II 수사 경과

- '20. 11. 16. ○○군청 압수수색 등
- '20. 12. 15. A○○·B○○ (사전)구속영장 청구, 기각(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)
- '20. 12. 17.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미수 사건 송치(경북도경)
- '21. 1. 21. A○○·B○○ 각 불구속 기소, C○○·D○○ 각 약식기소

III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 A○○

- '18. 10.경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B○○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
- '19. 6.경 B○○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, 9억 3천만 원 상당의 ○○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수수 [특가범위반(뇌물)]
- '20. 9.경 ○○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 원 수수, '20. 10.경 ○○건설 대표로부터 1,000만 원 수수 [뇌물수수]

● 피고인 B○○

- '19. 6.경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, 군수에게 9억 3천만 원 상당의 ○○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제공 [뇌물공여]
- '19. 6.경 뇌물공여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, 여성기업으로 허위 등록하여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[여성기업지원범위반] 등
- ※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2천만 원 초과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가능

● 피고인 A○○, B○○, C○○, D○○

- '19. 9.경 B○○가 공사 중인 군수의 □□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, 군수의 복구비용 절감을 위해 B○○에게 1억 7,5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하였으나, 특혜 논란으로 관급공사대금 미지급 [업무상배임미수]

IV 참고 사항

-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, 중대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